

의안번호	제 556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년 1월 19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556
----------	-----

제안연월일 : 2017년 1월 19일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1. 대안의 제안 경위

제352회 정례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으로 동 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 내용

- 가. 상위법령을 반영한 목적 정비(안 제1조)
- 나. 협의회 구성 사항 정비(안 제3조)
- 다. 운영세칙 신설(안 제6조)
- 라.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북도의회의장
2.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3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청북도교육감
4. 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
5.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6. 공군사관학교교장
7. 육군 제5019부대장
8. 공군 제3579부대장
9. 육군 제1987부대장
10. 공군 제3710부대장
11. 기무부대장
12. 충북지방병무청장
13. 청주교도소장
14. 충북남부보훈지청장
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재난안전실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
3. 작전담당간사 :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
4.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대공수사처장, 제606기무부대 방첩과장, 제37보병사단 정보참모
5. 경찰담당간사 :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6. 예비군담당간사 : 제37보병사단 동원참모, 충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7. 소방담당간사 : 소방본부장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충북도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을 “충청북도 내 통합방위상황”으로, “충청북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3항 중 “지원반장”을 “지원반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4인이상 9인이하”를 “4명 이상 13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본부장급”을 “실·국·본부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협의회의장”을 “협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1호나목 중 “**확보 유지**”를 “**확보·유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취약지역내**”를 “**취약지역 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관계기관의 협조 하**”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의료활동 봉사활동**”을 “**의료활동·봉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제5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수**”를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양식장의**”를 “**양식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u>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u>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u>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의회의장 2.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제22조에 따라 <u>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u></p>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u>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u></p>

3. 충청북도교육감
4. 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
5.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6. 공군사관학교교장
7. 육군 제5019부대장
8. 공군 제3579부대장
9. 육군 제1987부대장
10. 육군 제1673부대장
11. 기무부대장
12. 충북지방병무청장
13. 청주교도소장
14.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재난안전실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충청북도의회의장
2.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3. 충청북도교육감
4. 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
5.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6. 공군사관학교교장
7. 육군 제5019부대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공군 제3579부대장

9. 육군 제1987부대장

10. 공군 제3710부대장

11. 기무부대장

12. 충북지방병무청장

13. 청주교도소장

14. 충북남부보훈지청장

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
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
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재난안전실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

3. 작전담당간사 :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

4.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대공수사처장, 제606
기무부대 방첩과장, 제37보병
사단 정보참모

5. 경찰담당간사 : 충북지방경찰
청 경비교통과장

④ 충북도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는 충청북도지사, 제37보병사단장,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한다.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6. 예비군담당간사 : 제37보병사단 동원참모, 충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7. 소방담당간사 : 소방본부장

⑤ 충청북도 내 통합방위상황 -

----- 도지사-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
원반 활동-----.

④ -----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人以下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국·본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생략)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의 협조에 적

----- 4명 이상 13명 이하-----
-----.

⑤ -----
----- 실·국·본부장급 -----
-----.

⑥ 그 밖에 -----

협의회 의장-----.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 제5항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가. (현행과 같음)
- 나. -----
-----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 내 -----

-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생략)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나. (생략)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나. (생략)

<신설>

마. (현행과 같음)

바. ----- 의료활동·봉사활동-----

2. 영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 각목-----

가. ----- 양식장

나.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관 계 법 령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